

주식회사 대덕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덕'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DAEDUCK CO., LTD. (약호 DAEDUCK)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②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③ 자회사 등과 제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 지원 사업
- ④ 신기술사업, 창업 관련 투자·관리·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 ⑤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사업
- ⑥ 기술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용역수탁업
- ⑦ 부동산 임대업
- ⑧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⑨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⑪ 위 각항의 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duck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제 1 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 1 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 ②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 1 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제 1 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 3 (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 2 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천만주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발행 가능한 수로 한다.
- ② 제 2 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더 배당한다.
- ③ 제 2 항의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또는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련법규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련법규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또는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또는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또는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 삭 제 >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 삭제 >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제 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 삭 제 >

제14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전환금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및 주식의 종류는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 경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8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총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기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2명 이내로 하되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를 결의함으로써 대표이사,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장권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 삭 제 >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 결의를 위하여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

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3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④ 배당금
- ⑤ 임의적립금

제45조의 2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4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 삭제 >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2019. 03. 15)

제1조 (세칙제정)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실행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6조의 2 및 제17조의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04)

이 정관은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26)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기 1988년 12월 30일 개정
서기 1993년 03월 18일 개정
서기 1994년 03월 17일 개정
서기 1996년 03월 15일 개정
서기 1997년 03월 14일 개정
서기 1998년 03월 20일 개정
서기 1999년 03월 19일 개정
서기 2000년 03월 17일 개정
서기 2001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2002년 03월 15일 개정
서기 2015년 03월 20일 개정
서기 2018년 10월 30일 개정

서기 2019년 03월 15일 개정

서기 2020년 05월 04일 개정

서기 2021년 03월 26일 개정